

# 푸른꿈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푸른꿈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푸른꿈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제3조(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기숙사장, 부기숙사장, 학년장, 층장, 서기 등으로 구성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 가. 기숙사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전 협의 및 건의
  - 나. 부기숙사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행
  - 다. 학년장: 각 학년을 대표, 학년별 의견을 수렴, 자치위원회의 결과를 전달
  - 라. 층장: 기숙사 동의 각 층 대표, 각 층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층별 공동구역청소 진행
  - 마. 서기: 자치위원회의, 기숙사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

제5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1학기 말에 선출
2. 기숙사장, 부기숙사장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년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함

제6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학생들의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와 의결)** ① 자치위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봉사활동 시간 부여)**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시간만큼 학기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제9조(자치회 임원 주요활동)**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 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1. 주요활동: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선후배 간 예절과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민주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2. 환경미화 활동: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사감 교사에게 건의
3. 봉사활동: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4. 쾌적한 공간 조성 관리

### **【제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10조(생활 수칙 제정)** ①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 학생, 사감)과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② 생활 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2.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3. 학생 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4.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기타 생활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 ③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 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부칙 】**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규칙과 학생회칙에 준한다.